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9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6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9월 1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요건을 명확히 하고, 다른 조례에 의한 보훈관련 수당 수급자에게도 우리구 수당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보훈예우수당 지급 1년 이상 거주조건 삭제(안 제8조제1항)
- 보훈예우수당 중복지원 금지 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안 제9조제1항, 제3항)
-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목적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규정 삭제(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훈관련 수당의 중복 지급 금지를 삭제하여 우리구 수당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단체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 보훈예우수당 지급 1년 이상 거주조건 삭제(안 제8조제1항)
 - 지급 조건이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써 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삭제가 타당하다 봄
- 보훈예우수당 중복지원 금지 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19. 3. 28)으로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자치구 8개구(용산, 성동, 중랑, 도봉, 마포, 구로, 영등포, 강동)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안 제9조제1항, 제3항)

- 사망 유공자 위로금 지급을 그 유족에게로 변경함
-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목적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규정 삭제(안 제11조)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항 삭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개정안으로 인해 추가되는 예산부담이 매우 크다고 보며 이에 따른 집행부의 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 2022.6 현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 3,627명 (중복제외 2,485명)

구분	계	독립유공자 (유족)	전공상 군경	유족	미망인	무공 보국수훈 자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월남참 전유공 자	6.25참 전유공 자	고엽제 후 유 (의)증 환자
인원	3,627	26	391	299	221	434	15	940	278	1,023

○ 금천구수당, 서울시수당 총 지급인원수 : 1,985명

-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 22.6 기준 1,235명
-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22.6 기준 750명

참전명예수당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보훈예우수당	계
1,047	7	110	71	750	1,985

○ 보훈예우수당 미신청자 : 500명(2,485명 - 1,985명)

○ 조례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 중복지급시 추가 예상인원 : 1,735명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 1,235명
- 보훈예우수당 미신청자 : 500명

○ 내년도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인원수 : 2,485명

- 서울시수당 1,235명 + 보훈예우수당 미신청자 500명 + 구 보훈예우수당 수령자 750명

○ 내년도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2,485명 - 현재 예산서상 보훈예우수당 인원 1,100명 = 1,385명 추가

- 1,385명 x 5만원 x 12개월 = 8억3천1백만원 추가소요
- 약1400명 추산시 : 1400명 x 5만원 x 12개월 = 8억4천만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